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기관 간 분쟁 시 중재기관 선정〉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03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공기관 간 분쟁 시 중재기관 선정 (안 제14조의2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동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3. 6.

다. 회 부 일 : 2026. 3.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이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책임을 둘러싼 국제중재 사건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

그런데 해당 분쟁에 대한 중재가 국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금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 및 민감한 기술문서가 해외기관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 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중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국외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공기관 간 분쟁 시 중재기관 선정(안 제14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공기관 간 분쟁 시 중재기관 선정 - 공공기관 간 분쟁 발생 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사단법인을 우선 중재기관으로 지정 - 분쟁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허용

중재란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로 선택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 해결하는 제도로 「중재법」은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중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계약 체결 시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중재 제도 이용을 독려하고 있음.¹⁾

1) 국가계약법령 개정(2017년 개정, 2018년 4월 시행 및 이후 고시 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하나를 합의하여 해결하도록 명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의

현재 주요 국제 중재기관으로는 LCIA(영국, 런던 국제중재법원), ICC(프랑스,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SIAC(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등이 있으며, 국내에는 「중재법」 제40조²⁾에 따른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하고 있고, 특히 2026년 1월 대한상사 중재원 내에 국제중재세넬의 상설 기구인 ‘국제중재심판원’을 신설하여 국제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국외 중재는 메이슨 캐피탈(Mason Capital) 사건, 엘리엇(Elliott) 사건³⁾ 등 주로 해외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ISDS)의 형태이나 최근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국외 중재법원에서 다투게 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UAE 바라카 원전 분쟁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진행되면서 소송비용에 따른 외화 유출과 원전 기술 등 국가 전략 자산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거,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 체결 시 분쟁 해결 방식을 1) 조정, 2) 중재 중 하나로 정할 수 있음.

2) 「중재법」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2월 27일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해당 사건을 국내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⁴⁾, 이에 따라 양측은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철회한 뒤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사건을 이관하였음.

[UAE 원전 관련 한전-한수원 정산 협의 개요]

1. 한전-한수원 간 계약

- 한수원은 한전과 UAE 바라카 원전의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을 체결('10.5월)하여, 시운전·운영지원시스템 구축 등 역무를 수행

2. 공기 지연 발생

- UAE 원전 건설 과정에서 계획 준공일 대비 실제 준공일이 지연
 - 1~3호기는 각각 2~3년 지연되었고, 4호기는 '24.9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나, 정산 협의 등 이슈로 아직 준공되지 않음

3. 정산 협의

- (발주처-한전) 한전은 1~4호기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등을 발주처(ENEC)에 청구하여, 협의 진행 중
 - ※ 한전이 발주처에 청구한 비용에는 협력사들이 한전에게 청구한 비용 포함
- (한전-한수원) 한수원은 OSS 계약에 근거하여 공기 지연 비용(인건비 등) 및 OSS 계약 상 기본 의무 외 추가 의무 수행 비용을 한전에 청구
 - 양 기관 간 수 차례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한수원은 OSS 계약에 근거해 런던국제중재법원에 비용청구 중재 신청('25.5월)

개정안은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간의 분쟁 발생 시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법무부나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중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공공

4)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한전-한수원 간 국제 중재 관련 정부 권고 (2026.2.27.)

기관 분쟁에서 국내 중재기관의 활용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중재 사건의 과도한 소송비용의 발생 및 기술 해외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공기관간 분쟁의 국내 중재를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지정,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의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규정하는 법으로, 동 법에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다소 이질적인 면이 있고, 현행 「중재법」은 중재기관 선정에 관하여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분쟁 당사자가 중재 기관, 중재지, 중재절차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⁵⁾,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중재기관을 우선적으로 중재기관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 중재기관 선택을 제한하고 특정 기관에 사실상 독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중재법」의 기본원칙 및 법체계와 정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공운법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5) 「중재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12조(중재인의 선정) ② 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제20조(중재절차) ① 이 법의 강행규정(强行規定)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제21조(중재지) ① 중재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제29조(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 (단서 생략)

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 체제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이 계약의 성격, 사업의 특성, 비용 및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경영상의 판단' 영역으로 법률로 일괄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인 자율성 보장을 심각하게 위축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공공기관 간 분쟁 시 중재기관 선정) 공공기관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그 해결을 위 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 재법」 제40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하는 사 단법인을 우선적으로 그 중재 기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의 처

02)6788-5151